

산현유치원 규칙

제정 2021.03.01.
개정 2023.00.00.

<근 거>

- 유아교육법 제 10조, 제 19의 4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 10조
- 유아교육법시행규칙
- 교육부 고시 유치원 교육과정
- 경기도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 운영지침
- 경기도 유치원 방과후과정운영 지침
- 경기도유치원 수업료 및 입학급에 관한 조례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경기도 교육 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 10조와 동법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산현유치원~~ 본 유치원의 유아교육 및 돌봄 운영에 관해 필요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유치원은 공립단설 “산현유치원”이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원은 경기도 시흥시 목감둘레로 59-4에 위치한다.

제4조(교육목표) 삭제

~~본 원은 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린이, 함께 더불어 생활하는 어린이,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어린이로 한다.~~

제2장 교육연한 . 학기 및 휴업일

제4조(교육연한)

~~본원의 교육연한은 1년으로 하되, 만4세유아는 2년, 만3세유아는 3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유아교육법 제12조 1항에 의거하여 교육연한은 1~3 년으로 하고, 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5조(학기)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1학기는 3월 1일부터 유치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원장이 정한 날까지로 하고,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 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① 본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단, 방과후과정은 세부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1. 국가 및 관공서의 공휴일
2. 하계 및 동계휴가
3. 학년말 휴가
4. 토요휴업일 및 재량휴업일
5. 개원기념일
6. 기타 국가가 지정한 임시공휴일

② 제①항 각 호 이외의 휴업일은 수업일수를 연 180일이상 이수하는 범위 안에서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정할 수 있다. 단 방과후과정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③ 제①,②항외에 유치원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①항의 각 호 이외의 휴업일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3장 학급편제 및 유아정원

제7조(학급편제)

① 본 원의 학급편성은 교육과정반과 오후별도 방과후과정으로 한다.

② 본 원의 학급편성은 같은 연령으로 편성한다. 다만, 유치원장은 교육과정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혼합연령으로 학급을 편성할 수 있다.

③ 본원의 학급 수는 일반학급 18학급과 특수학급 2학급으로 관할청의 인가학급인 20학급으로 한다. 단, 학년도별 유아모집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8조(유아 정원)

- ① 「유아교육법시행령」 제 16조에 의거, ~~우리~~본원의 학급 수 및 학급 당 유아 수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급편성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운영한다.
- ② 방과후과정 유아 정원은 경기도교육청 방과후과정 운영지침을 기준으로 연령을 고려하여 ~~유치~~원장이 정한다.

제4장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제9조(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 ① 본원의 교육과정 운영은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과 추구하는 인간상을 바탕으로 국가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과 경기도유치원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따라 유치원 및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창의적인 유치원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 적용편성·운영한다.
- ② 교육내용은 유치원 및 지역사회의 상황, 유아의 발달과 흥미를 고려하여 운영한다.
- ③ 특수학급은 국가 수준의 누리과정과 경기도 특수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유아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 교육과정을 작성·운영한다.
- ④ 방과후과정반은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지침에 따라 유아의 신체, 심리적 상태를 고려하여 하루의 교육 활동이 균형을 ~~있게~~ 이루어지도록 배려하고며, 놀이와 쉼이 있는 돌봄 활동을 병행하여 운영한다.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유아평가)

- ① 유아평가는 유아의 발달 정도를 특정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와 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하되 결과 보다는 과정 중심의 평가에 역점을 둔다.
- ② 유아평가는 학기 초에 평가의 영역, 평가의 방법, 평가도구의 제작, 평가의 시기 등이 포함된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유치원장의 결재 후 시행한다.
- ③ 평가 결과는 유아 개개인의 성장발달을 돋고, 학부모 상담 자료로 활용한다.
- ④ 1년에 2회(1,2학기말) 이상 ‘나의 유치원 생활’을 가정으로 발송하여 유아의 바른 성장을 돋는다.

제11조(생활기록부 작성. 관리)

- ① 유아교육법 제14조에 의거 생활기록부를 작성한다.
- ②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 평가하여 유아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 지도에 활용하도록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한다.~~하고,~~
- ③ 이외 생활기록 기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생활기록부관리지침에 의거 관리한다.

제5장 수업일수 및 교육운영방법

제12조(수업일수)

-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유치원장이 정한다. 다만, 유치원장은 천재지변의 발생이나,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이 승인을 얻어 10분의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 ② 유치원장은 교육상 필요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30일 이내(공휴일, 방학, 휴업일 제외, 횟수 제한 없음) 수업일수로 인정할 수 있다.
- ③ 방과후과정 수업일수는 경기도교육청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지침에 따른다.
- ④ 수업일수는 유아교육법 제19조3 제1항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⑤ 국가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 상황 발생으로 학사일정 및 수업일수의 조정 · 감축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다.

제13조(교육시간)

① 본원의 수업시간은 1일 4~5시간으로 편성한다. 단, 방과후과정은 교육과정 포함 1일 8시간 이상 운영한다.

② 수업의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유치**원장이 정한다.

제14조(수업운영방법)

① 수업 운영은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유치**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 유치원, 과 학교와 협동교육을 실시하거나 동일연령 및 다른 연령의 학급과 혼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교사는 유아의 흥미와 개별 발달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운영한다.

④ 교육활동은 놀이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교실환경과 교재·교구는 계절, 주제, 행사 및 유아의 요구 등에 따라 적절히 재구성한다.

⑤ 교육활동은 발표, 토의, 관찰, 실험, 조사, 견학 등 유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 방법들을 활용한다.

⑥ 교재·교구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교수매체를 활용하되, 가능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주는 실물자료를 사용한다.

⑦ 교사는 확산적 질문을 많이 하여 유아의 호기심과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촉진 한다.

⑧ 유치원장은 감염병 상황으로 전체 등원수업이 곤란한 경우 유아발달을 고려하여 교사는 방송프로그램 및 정보통신 매체 등을 이용한 원격수업의 방법을 운영할 수 있다.

⑨ 일반 유아와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통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⑩ 유치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⑪ 국가적 재난 상황 발생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의 수업운영방법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다.

제15조(유치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① 유치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수업일수 인정 범위는 당해 경기도교육청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에 의거하며, 운영방안은 산 현유치원 허가 현장체험학습 규정에 의한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및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보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 단계 ‘경계’ 또는 ‘심각’단계가 발령될 경우, 교육부 인정 기준에 따라 유치원 규칙으로 명시한 일수와 상이할 수 있다.

제16조(건강검진 및 급·간식)

① 유치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건강검진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② 유치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해당 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유아에게 적합한 급·간식을 제공하며 유치원 방과후과정소위원회, 급식소위원회를 운영한다.

제17조(입학)

- ①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로 하며, 특수학급의 경우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의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유아로 교육청에서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통해 선정·배치된 유아로 한다.
- ② 입학 전형은 당해 학년도 유아모집 규정에 의한다.
- ③ 입학 시기는 당해 학년도 9월말까지로 하며, 인가 정원이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시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④ 본원의 중도 입학은 당해연도 유아선발 및 결원 충원 계획에 의거한다.

제18조(입학자격 및 선발기준)

- ① 본원에 입학할 수 있는 유아는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유아로 한다.
- ② 본원의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본원에 입학을 희망하는 유아는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입학하며,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입학자를 결정한다.
 2. 3·4세에 입학한 유아의 경우는 재입학을 희망할 경우 우선 입학을 허가한다.
 3. 본원에 입학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보호자는 유아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5. 보호자 신상에 변동이 생길 때와 주소를 변경할 때에는 자체 없이 유치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재입학, 편입학, 전입학)

- ① ~~우리~~ 본원의 재입학 또는 편입학, 전입학하려는 자는 결원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제17조 2항에 의거, 재입학 및 편입학, 전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만~~ 3, 4세에 입학하여 재원 중인 유아는 유치원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 재입학을 우선 허가한다.
- ③ 특수교육 대상유아의 경우 취학유예를 하여 유치원 교육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
- ④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유아로 취학 유예를 하여 유치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취소절차를 거친 후 일반유아와 동일하게 입학절차를 적용하도록 한다.

제20조(휴학)

- ① 질병 등 사유에 의해 휴학을 희망할 경우 유치원장은 휴원서를 받아 일정기간 동안 교육과정 이수를 중단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휴학은 학년도를 기준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3개월까지 할 수 있다.
- ③ 휴학 기간이 종료되면 복학 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자퇴, 퇴학)

- ① 질병 등의 기타 개인사정으로 ~~퇴학자퇴~~를 희망할 경우 ~~퇴학자퇴~~원서를 받아 처리한다.
- ② 유아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때 유치원장은 퇴학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가 전 가족 이주나 가정 사정 등으로 퇴학을 요구할 때
 2. 수업료 징수결정 후 이유 없이 10일 이상 무단결석 할 때
 3. 질병 및 기타 사유로 본인 및 타 유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유아

제22조(수료 및 졸업)

~~유치원장은 유아의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고려하여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하고, 졸업 인정자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 ① 유치원장은 유아의 교육과정 출석일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2분의 1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여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한다.

- ② 유치원장은 당해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5세 유아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 ③ 유치원장은 당해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3,4세 유아에게 수료장을 수여한다.

제7장 수업료·입학금 그 밖의 비용 징수

제23조(수업료 및 입학금)

- ~~① 유아교육법 제 24조 및 동법시행령 제 29조에 의하여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한다. 단, 지원자와 대상자의 경우 수업료를 납부해야 한다.~~
- ~~② 유아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 및 수업료는 경기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③ 입학금 및 수업료 반환은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제 10조에 의한다.~~
- ① 경기도교육청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에 따라 공립유치원의 입학금은 면제한다.
- ②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하여는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과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③ 본원은 경기도교육청 유아 학비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24조(기타 비용징수)

- ① 본원의 기타비용(수익자부담경비)은 간식비, 방과후과정운영비, 체험학습비, 특성화활동비, 기타 경비 등으로 구성한다.
- ② 수익자부담경비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치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③ 수익자부담비는 미리 고지하고, 징수하며, 사업종료 후에 정산하여 학부모에게 통지 및 유치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25조(비용 징수시기 및 회계처리)

교육활동비 및 수익자부담경비의 징수 시기는 교육공동체와 협의하여 유치원장이 정하고 회계처리 절차는 회계업무처리기준에 의한다.

제8장 방과후과정 운영

제26조(방과후과정)

방과후과정은 교육과정 이후의 시간에 운영하며, 당해연도 경기도교육청 방과후과정 운영지침에 의거하며 방과후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27조 (학급편성 및 유아정원)

- ② ① 방과후과정 학급은 10학급으로 편성하며, 유아 정원은 경기도교육청 방과후과정 운영지침을 기준으로 연령을 고려하여 유치원장이 정한다.

제28조 (운영일수 및 운영시간)

운영일수는 재량휴업일과 방학 중 운영을 포함하여 220일 이상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교육과정 포함 1일 11시간 이상 (08:00~19:00)으로 한다.

제29조 (운영방법)

- ① 하루 일과는 유아들이 가지는 신체, 심리적 부담을 배려하여 놀이와 쉼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 ②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은(언어, 음악, 미술, 체육, 과학 등) 학부모의 요구 및 유치원 실정에 따라 운영한다.
- ③ 방학중 방과후과정 운영 돌봄에 필요한 지원인력, 방과후 전담사 또는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

1인 이상을 배치하고 방과후과정 업무 담당교사를 둘 수 있다.

④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방과후과정 소위원회 및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결정한다.

제30조 (교직원 배치)

① 학급당 돌봄에 필요한 지원인력, 방과후 전담사 또는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 1인을 배치하고 방과후과정 업무 담당교사를 둘 수 있다.

②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 3장 23조 4항에 의거 본원은 인가학급 20학급으로서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단, 학년도별 유아모집 상황에 따라 학급이 편성되며 학급담임교사, 보직교사, 교과전담교사의 인원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자격기준은 인사자문위원회를 거쳐 정하며 학급담임교사, 보직교사, 교과 전담교사의 종류 및 그 업무분장은 유치원장이 정한다.

제31조 (운영경비 및 회계처리)

방과후 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할 수 있다.

제9장 교직원

제32조 (교원의 배치)

① 유아교육법 동법 시행령에 의거 본원은 유치원장, 유치원감 외에 학급마다 교사 1인을 배치하여 학급을 담당한다. 단, 유아특수학급은 관할청의 배치 기준에 따라 보조원을 둔다.

② 유아교육법 동법 시행령에 의거 각 학급담당 교사 외에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하기 위하여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할 교사, 방과후 전담사,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를 배치한다.

제33조 (휴직의 사유)

① 교원의 휴직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 휴직의 사유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34조 (교직원의 임무)

본원 교직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유치원장은 직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하며, 유아를 교육한다.
2. 유치원감은 유치원장을 보좌하여 원무를 관리하고, 유치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교육한다.
4. 행정직원 등 직원은 유치원장의 명을 받아 유치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35조 (연수)

①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재연구, 수업연구, 교직원 연수 등은 유치원 교육과정운영 계획에 의한다.

② 본원은 교직원 연수에 필요한 인적, 물적 지원을 한다.

제36조 (수업연구)

교사는 질 높은 수업이 되도록 부단한 연구·연찬하여야 한다.

제37조 (수업장학)

① 유치원장과 유치원감은 교사들의 교수-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수업장학을 실시한다.

② 유치원장과 유치원감은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 조언을 한다.

제38조 (근무규정)

① 교직원의 근무시간은 08:30~16:30을 원칙으로 하고, 유치원장의 명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다.

② 교직원의 복장은 품위유지를 위하여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교육적으로 필요한 경우 이에 맞는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③ 기타 사항은 공무원 복무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0장 각종 위원회 조직 운영

제39조(유치원운영위원회)

- ①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②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유치원 내외의 각종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유치원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기능)

- ①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 5.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 6.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 7.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8.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 9.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 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10. 「교육공무원법」제31조 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41조(인사자문위원회)

- ① 원내 제반 인사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성과급관리 등에 관하여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주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처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인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인사자문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2조(교권보호위원회)

- ① 원내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 및 대응,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등에 관하여 민주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교권보호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학부모회운영)

경기도교육청 학교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산현유치원학부모회를 구성·운영한다.

제 11장 생활지도 및 교육활동 보호 (신설)

제44조(적용)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 14조 2항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생활지도의 기준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따른다.(상위법이 개정될 경우 반영하여 적용한다)

제45조(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 ① 유치원장과 교원은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유아를 생활지도 할 수 있다.
 - 1.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 2. 유치원의 학급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3.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행위
 4.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5.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6.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7.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8. 유아 간의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
 9.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0. 그 밖에 유치원장 및 교원의 전문적 판단으로 생활지도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행위
- ② 위 사항에 대해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고시」제2장제5조부터 제8조에 의거 유아에게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할 수 있다. 보호자는 유치원장과 교원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 ③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유아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2. 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3. 기타 교원 및 유치원장의 교육적 판단으로 교육활동에 피해를 주는 물품

제46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 ① 유치원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유치원 규칙에 따라 기본적인 공중도덕과 질서의식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② 유치원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③ 유치원장은 「유아교육법」제15조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 대상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통합학급의 유아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7조(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유치원장과 교원은 유아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8조(이의제기)

- ① 보호자는 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유치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49조(기타) 그 밖에 생활지도가 필요한 사항은 교육관계 법령을 따른다.

제12장 규칙개정절차

제34조(규칙개정절차)

~~규칙의 개정은 원장의 제안에 의하여 법령(법, 조례, 지침등)의 범위 안에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이를 확정·시행한다.~~

제50조(규칙개정) 규칙의 개정은 유치원장이 규칙 개정안을 작성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확정·시행한다.

제51조 (규칙개정 절차)

- ① 규칙은 유치원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개정안을 수립한 후 입안예고(20일이상) 및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개정한다.

② 제1항의 규칙 개정안은 유치원장에 의해 제안되며,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는 재적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규칙 개정안은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공포한다.

④ 개정 시 법령(법, 조례, 지침 등) 범위 내에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2조(시행규칙)

규칙에 없는 사항은 유아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기타 지침, 훈령 및 제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부 칙

제1조(시 행 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규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유치**원장이 정한다.

제3조(기타사항) 이 규칙 외의 기타사항은 교육 관계법령을 준용한다.